

서울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2041935(본소), 2016나2041942(반소) 판결
[투자지분매매대금청구 · 정산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2041935(본소), 2016나2041942(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7248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1. A

2. B

피고(반소원고), 항소인C

변론 종결 2016. 12. 22.

판결 선고 2017. 2. 2.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72484(본소), 74350(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반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47,471,000원, 원고 B에게 52,87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에게, 원고 A은 40,257,868원, 원고 B은 37,038,41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1)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동업약정의 체결

1) 피고는 2013. 3.경 파주시가 소유한 파주시 F건물 7층에 관하여 용도 '식당', 사용·수익허가기간

'2013. 5. 18.부터 2016. 5. 17.까지'로 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2) 원고들과 피고, D 및 E 5인(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2013. 6. 14. 공동으로 투자하여 피고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위 F건물 7층에서 뷔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출자하여, 그 지분비율이 정해졌다.

E	25%	266,750,000원
피고	20%	213,400,000원
원고 A	25%	266,750,000원
원고 B	20%	213,400,000원
D	10%	106,700,000원
계	100%	1,067,000,000원

나. 이 사건 조합원들의 추가 출자 및 지분비율 조정

1) 피고는 2013. 6.경부터 'G'라는 상호로 이 사건 식당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식당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조합원들은 2014. 4.경 1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출자하기로 하고, 그 당시 이 사건 식당의 재산적 가치를 2억 원으로 평가한 후 각 조합원별 실제 추가 출자금에 따라 지분비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B이 600만 원, 피고가 2,000만 원, E이 2,500만 원, D이 1,0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들의 지분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정되었다.

E	25%	50,000,000원	28.736%	75,000,000원
피고	20%	40,000,000원	22.988%	60,000,000원
원고 A	25%	50,000,000원	19.157%	50,000,000원
원고 B	20%	40,000,000원	17.625%	46,000,000원
D	10%	20,000,000원	11.494%	30,000,000원

E	25%	50,000,000원	28.736%	75,000,000원
계	100%	200,000,000원	100%	261,000,000원

다. 원고 B의 지분 인수 제안 및 H의 지분 인수 제안

1)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합원들의 추가 출자에도 이 사건 식당의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원고 B은 2014. 9.경 이 사건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원고 B이 이 사건 식당의 채무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4억 원(실제 인수대금 1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식당 운영권 전부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나머지 조합원들은 모두 동의하였으나, 원고 B의 위 제안은 무산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식당의 거래업체인 K의 사장 H는 2014. 10.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채무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5억 5,000만 원(실제 인수대금 3억 원)에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원들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동의하였으나, 원고들은 반대하였다.

3)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하도록 원고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2014. 10. 10. 원고들이 이 사건 동업약정 및 출자에 따라 각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지분을, 3억 원에 원고들의 변동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인, 원고 A의 경우 57,471,000원(다만 원고 A이 H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 47,471,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원고 B의 경우 52,875,000원에, 피고가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은 위 지분매매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각 지분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신의 성명 기재란에 서명·날인한 후, 원고들에게 이를 각 교부하였다.

4) 그러나 원고들이 H의 지분 인수에 계속해서 반대하자, H는 2014. 10. 중순경 이 사건 식당 운영권 인수위사를 철회하였다.

라. 피고의 지분 인수 제안 및 E, D의 지분 매도

1) 이 사건 식당의 경영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H의 지분 인수 제안이 철회되자,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채무 3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5억 5,000만 원(실제 인수대금 2억 5,000만 원)에 직접 이

사건 식당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18.경 E, D와 사이에 E, D이 이 사건 동업약정 및 출자에 따라 각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지분을, 2억 5,000만 원에 이들의 변동된 지분비율을 곱한, E의 경우 71,840,000원에, D의 경우 28,735,000원에 각 피고가 포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 D의 위 각 지분을 매수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4. 10. 22.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현 영업실태

1. 채무금: 3억 원 초과
2. 영업상태 : 자본금 잠식
3. 현 손익대차대조표 : 기존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음
4. B님이 3차례에 걸쳐 인수하려고 하였지만, 번번히 인수가 되지 않아 현재 채무금은 계속 쌓여만 가고,
5. 결혼식 준비도 불가 방침을 통보받아 결혼행사 사업도 접고, 그래서 D님과 E님은 총 5억 5천만 원을 자산으로 보고 채무금 3억 원을 제한 금액으로 현금 2억 5천만 원에 대해 자기 지분을 피고에게 넘겼습니다.
7. 피고는 지분을 100% 인수해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일반 체인점 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아놓은 행사 40여건이 끝나는 시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해서 한번 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8. 원고 B 님과 원고 A 님이 현재 지분을 고수하고 있는 시점이고, 또한 원고 B님이 인수를 하지 않는 관계로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면서 이미 업무는 마비된 상태입니다. 현재 피고가 자기 돈을 들여 급여 및 일부 채무금을 간신히 변제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 만일 원고 B 님과 원고 A 님이 지분을 현금 2억 5천만 원에 자기 지분비율로 받고 지분을 넘긴다면 피고가 돈을 마련하여 체인점을 위탁운영할 업체에 넘겨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17. 그렇지 않고 지분만 고수하신다면 내년까지 받아놓은 행사만 잘 치르고 파주 시청에 영업을

그만두겠다고 신청할 예정입니다.

20. 2014년 10월 31.일까지 답변이 없으시면 지분을 포기한 것으로 법적 인정하고, 청산절차 또는 타 업체 체인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2. 지분별로 2억 5천에 대한 지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B님 17.625% * 2억 5천만 원 = 44,062,500원 입니다.

원고 A님 19.157% * 2억 5천만 원 = 47,892,500원입니다.

23. 2014년 10월 31.일까지 답변이 없으시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으로 법적 인정되오니 꼭 답변을 주시어 서로간의 살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 13,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4. 10. 10. 원고 A에게 47,471,000원, 원고 B에게 52,875,000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동업약정 및 추가 출자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지분을 원고들로부터 모두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각 교부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지분매매계약을 청약하였고, 원고들은 위 각 지분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한 후 2014. 10. 31. 피고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위 각 지분매매계약에 대한 원고의 청약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지분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47,471,000원, 원고 B에게 52,875,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지분매매에 관한 청약 및 승낙의 의사표시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0. 10. 원고들이 이 사건 동업약정 및 출자에 따라 각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지분을, 원고 A의 경우 57,471,000원(다만 원고 A이 H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 47,471,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원고 B의 경우 52,875,000원에, 피고가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은 위 지분매매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성명 기재란에 서명 날인을 한 후 원고들에게 이를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각 지분의 매매(이하 '이 사건 각 매매'라 한다)를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약(이하 '이 사건 청약'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청약을 받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원고들의 서명·날인을 한 후 2014. 10. 31.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여 위 매매에 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완성한 이 사건 각 계약서가 피고에게 전달된 시기가 2014. 10. 31.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2014. 11. 3. 위 각 계약서를 원고들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청약에 대한 원고들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2014. 11. 3.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의 청약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에 원고들이 이미 위 청약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0, 11, 15, 17,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청약 당시 승낙기간의 정함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청약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 전부를 제3자인 H에게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H의 이 사건 식당 인수의사가

유지되는 시점까지가 그 승낙기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5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H의 이 사건 식당 운영권 인수를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청약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청약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은 승낙기간의 정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청약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이라고 할 것이다.

①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I는 이 사건 청약 이전인 2014. 10. 4.경부터 이 사건 식당 운영권 전부를 H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H와 매각조건에 관하여 협상하였다.

② H는 위 협상과정에서 2014. 10. 8. 및 같은 달 9. 원고 B와 연락하였는데, 당시 원고 B은 H에게 위와 같은 식당 운영권 매각방안에 관하여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③ 이와 같이 원고 B이 위 매각방안에 반대하고 있음을 H가 I에게 알리자, I는 H에게 이 사건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식당 운영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고 원고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3).

④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H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을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들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기간을 도과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가)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 것이고(민법 제529조), 이때의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상의 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청약에 대한 원고들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그 승낙기간으로서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약이 H의 이 사건 식당 운영권 인수를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거나 H의 이 사건 식당 운영권 인수의사가 유지되는 시점까지를 그 승낙기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 원고 B와 H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점과 △ 원고 A에 관한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 A이 H에게 빌려간 돈 1,000만 원을 지분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H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을 인수하려고 하던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청약은 H의 이 사건 식당 운영권 인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승낙이나 거절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었다.

②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청약으로 원고들에게 제시한 지분의 처분대가가 원고들의 출자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그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청약을 받은 2014. 10. 10.부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수령한 2014. 11. 3.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식당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들이 지분매매대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이 사건 식당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야만 하거나, 그 조사에 장시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의사결정을 위한 장기간의 승낙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청약 이후 H가 이 사건 식당 운영권 인수의사를 철회하자,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채무 3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5억 5,000만 원에 직접 이 사건 식당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4. 10. 22. 원고들에게, 피고가 원고 A에게 47,892,500원(= 2억 5,000만 원 × 19.157%)을, 원고 B에게 44,062,500원(= 2억 5,000만 원 × 17.625%)을 각 지급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지분을 직접 인수하고자 하니 2014. 10. 31.까지 답변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청약과는 다른 별도의 청약을 하기도 하였다.

④ 그런데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들의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해 온 원고 A의 아내 J은 2014. 10. 29. 피고의 남편인 I에게 "외부 사람4) 이 인수를 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도 아닌 이상, 우리네 지분자5) 가

인수를 한다면 50% 지분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고의 위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원고들의 지분 처분대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⑤ 원고들로서는 늦어도 J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2014. 10. 29.까지는 이 사건 청약에 대하여 승낙 혹은 거절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었고, 또한 H의 지분인수 제안 및 철회 경과와 피고의 새로운 지분인수 제안 경과 등에 비추어 늦어도 그 무렵까지는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은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4. 11. 3.에야 J을 통하여 원고들이 서명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⑥ 게다가 이 사건 조합원 중 E, D은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E, D에게 제시한 지분의 처분대가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 전인 2014. 10. 18.경 이미 피고에게 자신들의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지분을 모두 매도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원 지분의 매도를 위한 재산조사 등으로 장기간의 승낙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2014. 10. 10. 원고들에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청약을 하였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인 2014. 11. 3.에 비로소 피고에게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 지분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지분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2014.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논의하여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동업약정은 해지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식당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위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의 적극재산은 47,940,000원, 소극재산은 258,087,039원으로 소극재산이 210,147,039원 더 많은 상황이고 이는 결국 피고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소극재산 210,147,039원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에게 원고 A은 40,257,868원, 원고 B은 37,038,41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지분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3, 4, 6, 7, 9, 12,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거나, 위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의 재산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항소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종관

판사김유진

판사박해빈

1) 반소장 및 2016. 4. 21.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서에는 '소장 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청구 내용에 비추어 '반소장 부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실제 기존 투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1,067,000,000원이었으나 이를 2억 원으로 평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기존 투자금을 계산하였다.

3) [H와 I의 2014. 10. 10.자 대화 녹취록(을 제17호증의 3)]

H: 난리가 나, 어제 저녁에 전화와 가지고 난리가. 내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 그런 일이 반드시 내가 이루어질 거 같아가지고, 괜히 친구지간에 금만 가버리잖아.

I: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일단은 우리 주주 다섯 명들 다 포기각서 오늘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B하고 A은 제가 그 지분만큼 돈 해가지고 줘버리고.

4) H를 의미한다.

5) 피고를 의미한다.